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2015년 5월 노동시장 분석 : 최저임금제,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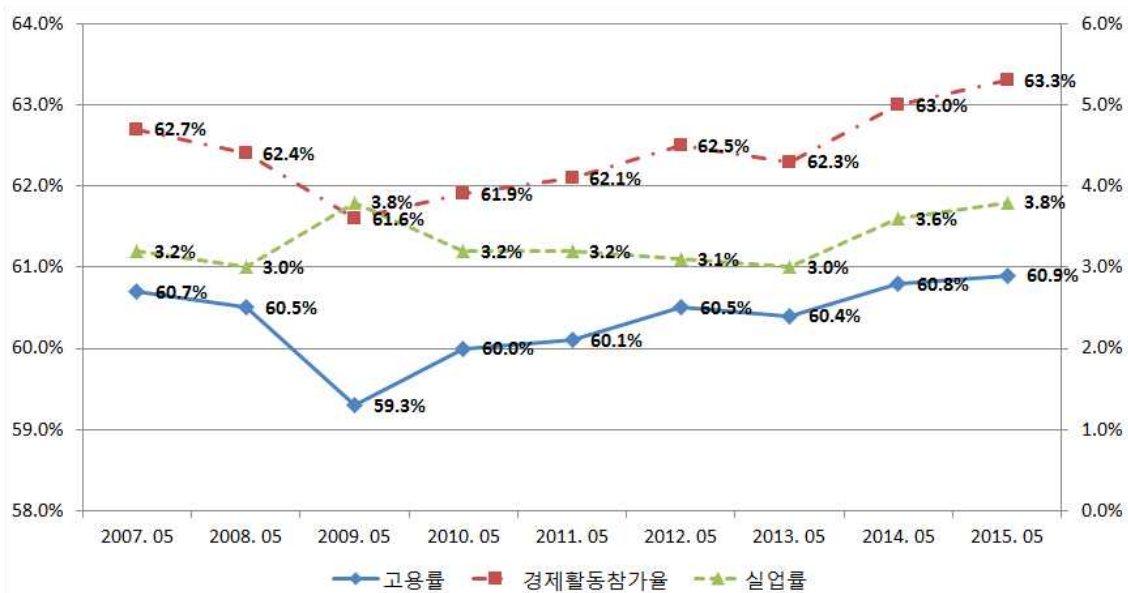
2015. 6. 26 | 김수현\_새사연 연구원 | sida7@saesayon.org

2015년 5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5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2014년 보다는 상승세가 약화되었지만 고용지표 전반의 상승세 유지

그림 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각 연도 5월 (단위 : %)



※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좌측 축, 실업률은 우측 축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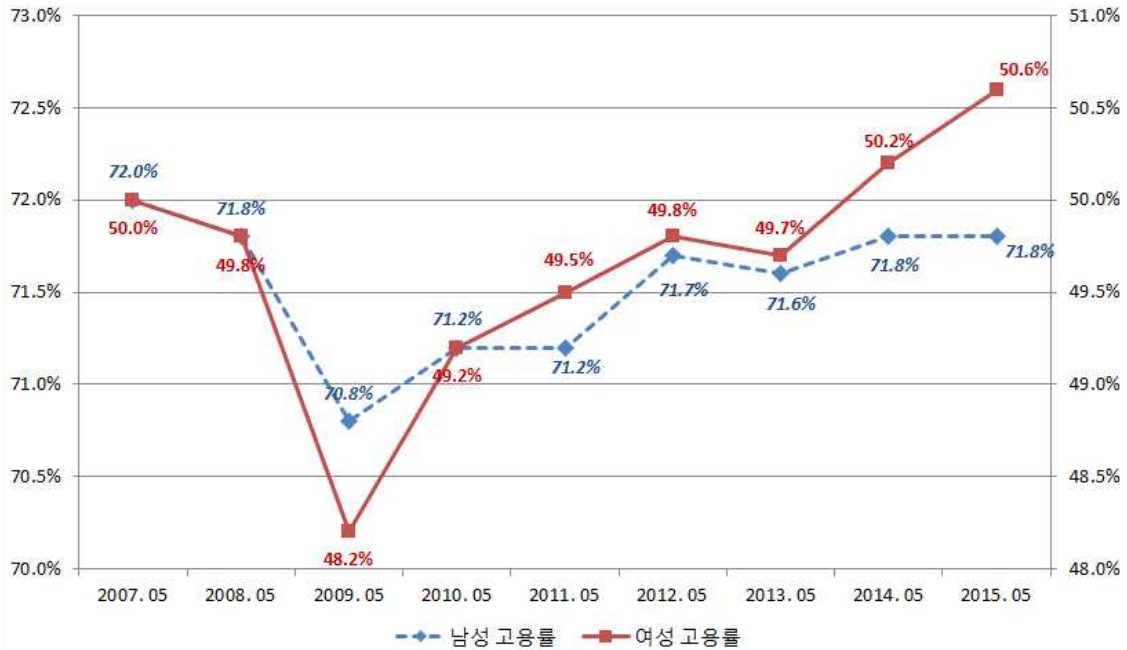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성별로 보면 금융위기 이후 여성 고용률의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기 48.2%까지 내려갔던 여성 고용률은 2015년 5월 현재 50.6%까지 상승함



- 특히 최근 2년 동안은 남성 고용률에 비해 훨씬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성 고용률은 2014년 5월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2015년 5월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한 반면, 남성 고용률은 2014년 5월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2015년 5월 전년동월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음

그림 2. 성별 고용률 변화 추이, 각 연도 5월 (단위 : %)



※ 남성 고용률은 좌측 축, 여성 고용률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경제지표나 고용지표가 회복을 보이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민들은 그런 회복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분석들이 필요함
- 또한 노동시장 내 지속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에 주목해야 하며, 최근 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차별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여성이나 중고령 취업자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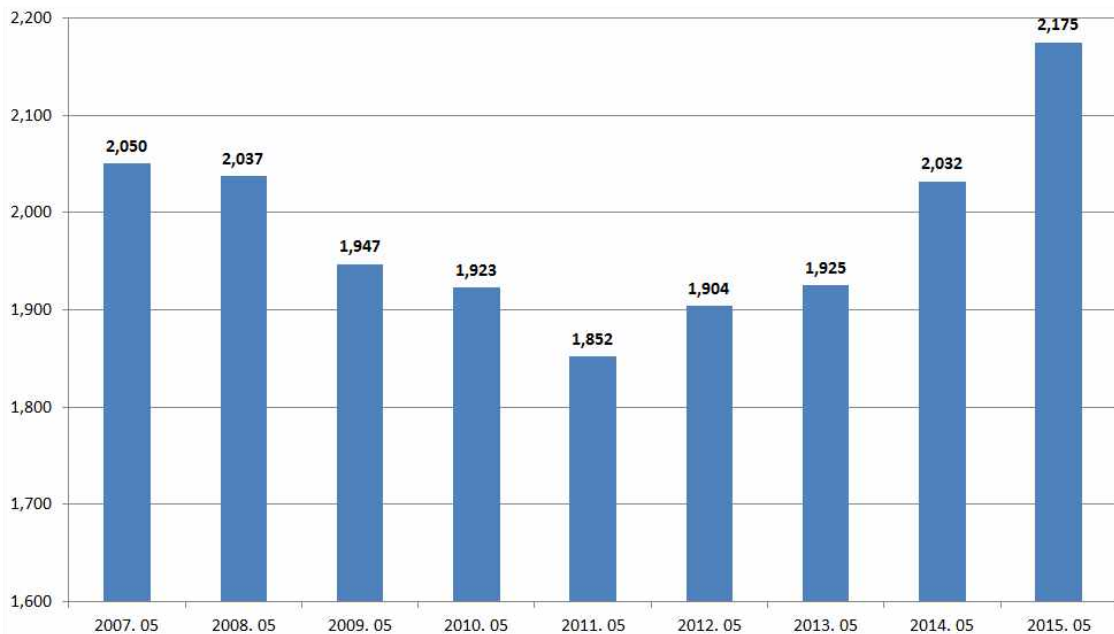
#### □ 취업자

- 취업자는 2,618만 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9천 명 증가. 지난 달 줄어들었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다시 30만 명 이상으로 회복됨
- 산업별로 구분해 보면 전년동월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14만 3천 명), 제조업(14만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 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6만 7천 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6만 명), 건설업(4만 1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농업, 임업 및 어업(-12만 2천 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5만 2천 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4



- 만 7천 명), 금융 및 보험업(-4만 6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함
- 2015년 5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각 연도 5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1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2012년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2014년과 2015년 모두 전년동월대비 1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를 보임
- 숙박 및 음식점업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높고<sup>1)</sup>, 임금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sup>2)</sup> 산업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증가가 노동시장과 노동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고찰이 필요함

그림 3.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추이 (각 연도 5월) (단위 : 천 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좌측 축, 제조업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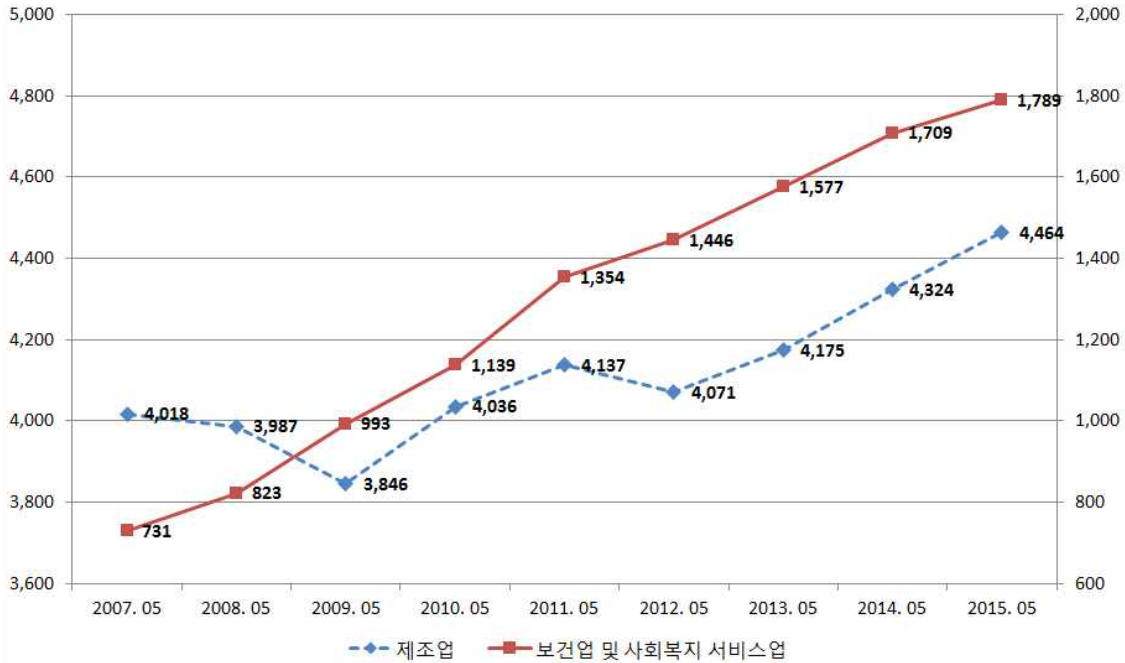
- 제조업 역시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함(14만 명 증가). 금융위기 시기 40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5년 5월 현재 446만 4천 명까지 증가하였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민간부문의 서비스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금융위기와 관계없이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음. 2015년 5월 현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78만 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명 증가함

1) 2015년 3월 현재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정규직 비중은 고용형태로 비정규직 규모를 계산하는 정부 기준으로는 40.4%이며, 고용형태와 종사상 지위를 이용해 비정규직 규모를 계산하는 노동계 기준으로 83.0%임(비정규직 개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유선 (201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를 참조할 것)

2) 2015년 1월~3월 사이 전체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231만 4천원인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31만 7천원임



그림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조업의 취업자 추이 (단위 : 천 명)



※ 제조업은 좌측 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수의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 수는 2007년 5월 194만 5천 명에서 2015년 5월 153만 4천 명으로 감소함
- 금융 및 보험업 역시 2015년 들어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5년 5월 현재 금융 및 보험업의 취업자 수는 79만 7천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4만 6천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도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2015년 5월 현재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는 91만 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7천 명 감소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보다 여성 취업자의 증가가 더 많았음. 남성 취업자는 1,509만 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만 3천 명 증가. 여성 취업자는 1,109만 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 5천 명 증가함
- 2014년 이후 고용지표 개선에 있어 여성 취업자의 증가세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연령계층별로는 50대와 60세 이상 중고령층 취업자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음
- 전년동월대비 50대 취업자 수는 14만 7천 명,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6만 7천 명이 각각 증가하였음. 반면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전년동월대비 30대 취업자 수는 4만 4천 명, 40대 취업자 수는 7천 명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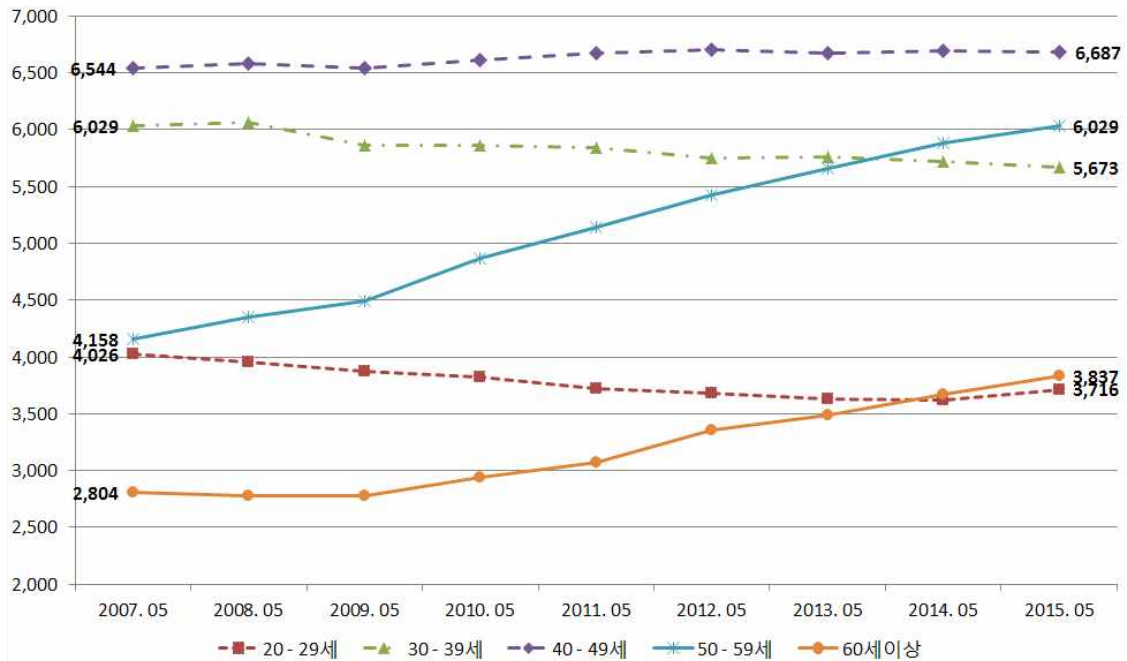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9만 9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고용률 역시 1.2%p 증가함
-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노동시장 내 중고령층의 증가가 두드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반면 20대와 30대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줄어들었음. 이러한 변화는 고령화와 같은 인구변화, 산업구조 변화,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대, 세계화로 인한 경쟁의 격화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여러 환경적 요인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음

그림 5.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 변화 (단위 : 천 명)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102만 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1천 명 증가함.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실업률은 3.8%임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음. 2015년 5월 현재 20대 청년층의 실업률은 9.4%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청년층의 경우 구직활동을 하는 연령층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실업률을 보임
- 2015년 들어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대비 청년층 실업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청년층들이 노동시장에 나와 일자리를 구하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정부는 노동시장 내 mismatch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과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정책 등을 통해 높은 청년 실업률과 지속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 공식적인 실업률은 이처럼 3.8% 수준이지만, 실업자와 함께 잠재경제활동인구<sup>3)</sup>,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sup>4)</sup>를 광의의 실업자를 보고 이들 광의의 실업자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광의의 실업률(통계청 : 고용보조지표<sup>5)</sup>)은 11.0%로 나타남
- 정부는 연구자들이 요구하던 광의의 실업률 통계를 제공하고 있지만 연령별, 성별 등과 같은 자세한 내용은 여전히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음. 광의의 실업률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자세한 광의의 실업률에 대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비경제활동인구는 1,576만 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3천 명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535만 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9천 명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1,040만 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4천 명 증가함

## 최저임금제 도입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 □ 최저임금제도의 내용

-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제의 목적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최저임금법 제1조)
-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임<sup>6)</sup>
- 최저임금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최저임금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최저임금액을 심의해야 함
- 또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고 사용자의 주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최저임금법 제11조)
- 2015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임
-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가 올해도 진행 중

3) 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의 합계. 여기서 잠재취업가능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3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를 가리키며, 잠재구직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취업이 가능한 자를 의미함

4)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취업자 중에서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추가로 취업이 가능한 자

5) 고용보조지표<sup>3)</sup> =  $\frac{\text{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text{실업자}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text{경제활동인구}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

6)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



임. 이를 통해 2016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것임

□ 반복되는 논쟁.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줄이고 실업 문제를 심화시키나?

-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핵심 논쟁 주제임
- 올해도 1만원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하자고 하는 노동자 대표와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 대표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이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고용이 줄어들고 실업이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 주장함
- 이에 대한 근거로 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총이 실시하는 중소기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매년 많은 중소기업 사용자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감원을 할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음.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 역시 마찬가지임. 최근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감원할 것이라 대답이 상당수를 차지함
- 하지만 이들의 설문조사 결과와 달리 한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진 경험은 찾기 어려움.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감원하겠다는 설문결과들이 나왔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한 다음 연도에 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한 대규모 해고는 없었음. 최저임금 관련 국내 학술연구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감소 효과는 없거나 미미한 수준에 거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 이처럼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임금을 인상하면 고용이 줄고 실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결과가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학 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만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 있음. 사용자들이 경제학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윤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직접적으로는 고용감소라는 결과가 아닌 사용자의 이윤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
- 노동의 단위가 노동시간이라는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음. 경제학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는 사실 사람의 단위가 아닌 노동시간 단위임. 즉, 사용자들이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해고보다는 노동시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최저임금 인상. 오히려 고용을 증대시킬 수도?

-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 주장에 대해 반대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비가 증가할 경우 고용이 감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을 증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임



- 경제학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소비의 소득탄력성이 크다고 보고 있음. 이는 같은 소득 1% 증가라 하더라도 이미 충분한 소비를 하고 있는 고소득층에 비해, 소비 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저소득층에서 더 많은 비율의 소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함.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는 최저임금 인상은 현재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 경제성장, 고용 증대를 견인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특히, 경기 침체, 경제적 불확실성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기업의 이윤이 투자로 직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 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는 정책과 함께 소비와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음
- 영국, 독일, 브라질 등 최저임금제 도입 또는 인상의 해외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가 아닌 이와 같은 소비 증가로 인한 고용 증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영국의 경우 보수당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성장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정하였음. 또한 독일의 경우에도 올해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소비가 크게 활성화되었고 실업률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의 투자에서 시작해 고용 확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순환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소비에서 시작하는 즉, 소비 증대가 기업 투자, 고용 확대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소비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순환 구조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임

□ 최저임금 적정 수준? 본연의 목적을 다 할 수 있어야

-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
- 이는 최저임금제의 도입 목적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됨. 최저임금법 1조(목적)은 최저임금제 목적에 대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 밝히고 있음
-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수준의 최저임금 수준은 적어도 “성인으로 하여금 결혼,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 은 되어야 할 것임. 본 연구원(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는 이와 관련해 사회적 재생산을 고려할 경우 8,733원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음<sup>7)</sup>
- 하지만 이는 여전히 논쟁적인 부분임. 보다 정확한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노동자들에게 실제 필요로 하는 생계비 수준을 묻는 설문조사 역시 필요할 것임. 경총 등이 하고 있는 사용자들에 대한 비용 측면의 조사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인 노동자들에게 직접 필요한 생계비를 물을 필요도 있다 생각됨. 이를 비롯해 보다 자세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제의 목적에

7)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5)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고찰 및 적정 최저임금 추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을 참조할 것





맞는 수준의 적절한 최저임금이 설정되어야 할 것임

- 나아가 “그렇다면 정말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사업을 접을 수준에 있는 사용자들, 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함
-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주지 못하고 이윤 수준도 매우 낮은 위기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경총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맞지 않게 최저임금 수준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법’ 도 있겠지만 ‘최저임금 도입 취지에 맞게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고 노동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소비를 활성화하는 방법’ 을 시행하는 동시에 이들 사용자 및 기업들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서도 최저임금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이들 중소기업 및 사용자의 상황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제로 위협에 처할 수 있는 기업 및 사용자들의 신청을 받아, 단기적인 재정 지원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직면한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임
- 또한 이들 사용자 및 기업들이 시장경제가 추구하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수입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정책도 마련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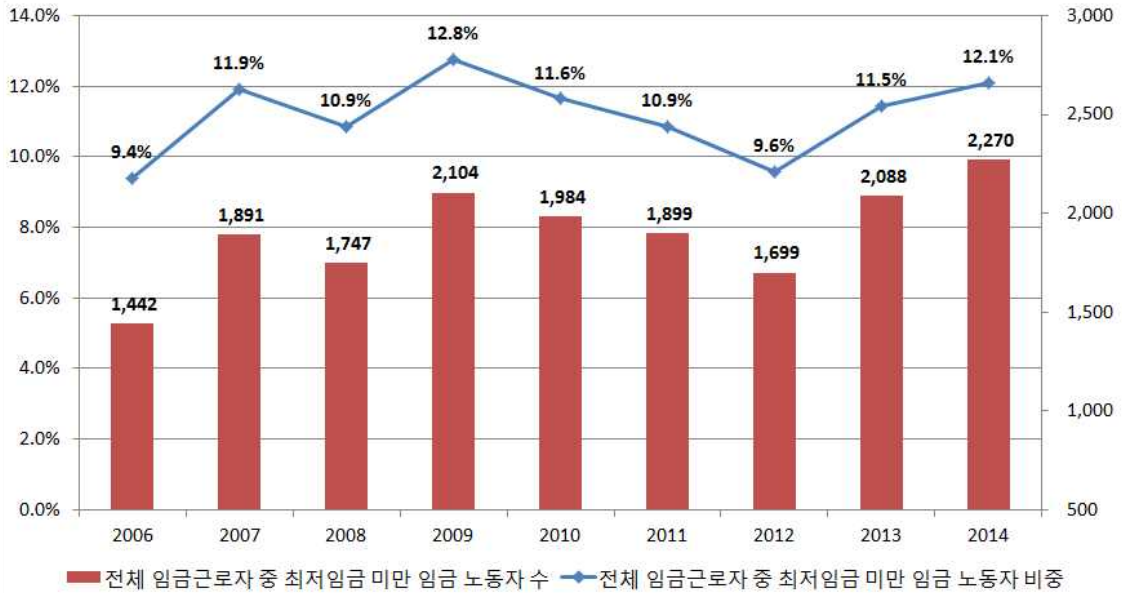
□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 최저임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의 월평균 임금을 시간당 임금<sup>8)</sup>으로 환원했을 때 법정 최저임금 기준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비중은 2014년 8월을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2.1%임(2014년 법정최저임금은 5,210원임)
- 여기에는 2014년 현재 최저임금제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감시, 단속직 노동자들 등도 포함되어 있음. 하지만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그보다 낮은 임금을 상요당한 이들 역시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됨

8) 여기서는 주간노동시간을 일일노동시간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다시 연간, 월간노동시간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월간노동시간을 계산해 그것으로 월평균 임금을 나누는 방법을 통해 시간당 임금을 구하고 있음



그림 6.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들의 규모 및 비중 (단위 : 천 명, %)



※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좌측 축, 저임금 노동자 수는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 각 연도 8월 자료 이용 추산

-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
- 최저임금 고시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주는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부족분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 외 과태료 등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보다 최저임금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함. 또한 2010년 최저임금(4,110원)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했던 최저임금 위반 신고 포상제도(최저임금 4110지킴이) 등과 같은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sup>9)</sup>
- 최저임금제가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정최저임금으로 대상자들이 모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함. 정부는 최저임금제가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최저임금 관련 정책들을 수행해야 할 것임. ▶

9) 단 이 경우 포상수준을 이전에 비해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5년 6월 25일 현재

아젠다	발간 일	제목	작성자
한국경제	1/8	'가상의 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정태인
세계경제	1/12	약 엔, 강 위안, '슈퍼 달러' 의 시대 도래?	박형준
고용,노동	1/15	노동시장 유연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김수현
주거	1/22	소수자가 된 무주택 서민의 미래는?	강세진
돌봄	1/26	'좋은 돌봄',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	최정은
복지	2/3	복지 없는 노후는 '재앙' 이다	이은경
잇:북	2/11	2015년 전망보고서 종합 : 침체의 지속, 복지 축소 정책의 위기	미디어팀
고용,노동	2/16	허점투성이 월급으로 은폐되는 '장시간 노동'	이정아
고용,노동	2/24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1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경제	2/27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①자본주의 다양성 모델들	박형준
경제	3/5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②한국사회경제모델의 나아갈 길	박형준
돌봄	3/9	아동학대와 CCTV 논란, 보육정책 방향	최정은
고용,노동	3/16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이정아
고용,노동	3/19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2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주거	3/23	주택시장동향분석(5) :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강세진
보건,의료	4/9	의료급여와 노인환자가 재정위기의 주범?	이은경
경제	4/13	'생활' 과 '생명' 사이	이정아
고용,노동	4/16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3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고용,노동	4/21	끝없는 최저임금 논쟁, 출산·양육 가능한 최저임금은 "최소 7,466원"	새사연
경제	4/24	법인세의 모든 것 : ① 분배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상동
고용,노동	4/28	감춰진 제3의 지표, '체감 실업률'	송민정
경제	5/7	법인세의 모든 것 : ②대기업들의 합법적 탈세비법 세 가지	이상동
주거	5/14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사업, 아직은 시기상조	진남영
고용,노동	5/18	2015년 4월 노동시장 분석 : 불안정 노동자의 개념 및 규모	김수현
고용,노동	5/21	노동자가 소비자다 : 떠오름과 빈곤의 역학	이정아
주거	6/5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 후기① 더 많은 사람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 새로운 주체의 발견과 청년의 사회혁신	민달팽이 유니온
주거	6/8	주거문제의 혁신, 해답은 '현장' 에 있다	민달팽이 유니온
지역,사회	6/12	센서스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① : 인구기초통계	강세진
경제	6/15	죽을 때까지 저축하는 이유	이정아
복지	6/19	국민연금 적정선 논의, '현실' 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최정은
고용,노동	6/23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	송민정
고용,노동	6/25	2015년 5월 노동시장 분석 : 최저임금제,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김수현